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장 애 인 · 노 인 · 임 산 부 등 의 편 의
증 진 보 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인증의무시설 범위를 정하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가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4. ~ 10.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2제3항”을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의무인증시설로 다음 각호의 자가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재축하는 의무인증시설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연구원

5.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9.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
- ③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의무인증시설로 제2항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의무인증시설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200만원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100만원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1호	10만원
사.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의 범위) <u>법 제10 조의2제3항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u><신 설></u>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의 범위) ① <u>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u> ----- ----- ② <u>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의무인증시설로 다음 각호 의 자가 신축·증축(건축물이 있 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 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재축 하는 의무인증시설은 별표 2의2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u>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

<신 설>

른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지방연구원

5.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
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
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
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출
자·출연기관

9.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

③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의무인증시설로 제2항 외
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의무인증시설은 「초
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u>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고 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 물로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7~8